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·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총리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9명(5급)”을 “11명(4급 2명, 5급)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3 제3호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3년 9월 30일”을 각각 “2024년 9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237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236
고위공무원단	14
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10
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	26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, 과학기술서기관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4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0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사무관	86
행정사무관,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15
행정주사	17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12
행정주사, 운전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	1
행정주사, 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	1
행정주사보	3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4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	6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3
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2
학예연구사	1
운전서기보	3
사무운영서기보	3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
법제처 공무원 정원표(제11조제1항 단서 관련)

총계	237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236
고위공무원단	14
부이사관 또는 서기관	10
부이사관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	26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서기관, 과학기술서기관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4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0
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	1
행정사무관	86
행정사무관,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15
행정주사	17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12
행정주사, 운전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	1
행정주사, 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	1
행정주사보	4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4
운전주사보	1
행정서기	5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3
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2
학예연구사	1
운전서기보	3
사무운영서기보	3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·②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, 법제정보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하며, 법령데이터혁신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 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- -----.
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법제처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(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「법제처 직제」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	제11조(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

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,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(5급 1명, 6급 1명), 법령심사,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9명(5급 8명, 6급 1명)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(9급 1명)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2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

① 「법제처 직제」 제16조에 따라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1. 법제조정법제관 1개 직위

2. 삭제

----- 10퍼센트-----

② -----

-- 11명(4급 2명, 5급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제8조제8항의 사회문화법령 해석과장	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